OEM 공급계약서

제1조 (당사자)

주식회사 000 (이하 "매수인")와 주식회사 000 (이하 "매도인")은 아래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목적)

본 계약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OEM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계약품)

본 계약 중에 사용되는 "계약품"이란 매수인이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의 규격을 사용해 제조한 상품을 의미한다.

제4조 (판매)

매도인은 매수인의 주문에 따라 계약품을 제조하고, 그것을 매수인에게만 판매한다.

제5조 (계약지역)

- ①매수인은 전 세계에서 계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 ②매도인은 00 이외의 브랜드명을 갖는 계약품과 동일한 제품을 전 세계에서 판매할 수있다.

제6조 (기간)

본 계약은 당사자에 의한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고, 본 계약 중의 규정에 따라 조기에 종료되지 않는 한 5년간 효력을 존속한다. 최초의 5년간 또는 연장 최종일의 적어도 6 개월 전까지 어느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특별한 통지를 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1년마다 자동적으로 경신된다.

제7조 (개별계약)

- ①매수인은 본 계약기간 중 매 6개월마다의 구입 예측을 해당기간 개시 6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②매수인은 위의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구입 예측에 따라 매도인에게 개별 주문서를 내고, 매도인에 의해 동의 된 개별 주문서의 조건에 따라 계약품을 구입한다. 매수인의 딜러 및 고객은 개별 주문서를 낼 수 있으며, 그 주문서의 조건에 따라 계약품에 대한 지불을 할수 있다. 개별 주문서는 본 계약에 구속되며, 매수인은 그들의 의무에 관해 책임을 진다.

제8조 (구입)

- ①본 계약기간 중 매수인은 매수인이 그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주문 수량의 1/3에 상당하는 계약품 수량 이상을 매도인으로부터 구입하기로 하지만, 단 매수인은 본계약기간 중 해마다 계약품을 1년째 00, 2년째 00, 3년째 00, 4년째 00, 5년째 및 계속되는 다음해 00이상 매도인으로부터 구입할 것을 보증한다. 본 조의 목적을 위해 계약품은계약품에 대한 대금이 매도인에 의해 실제로 수령된 때에 구입된다.
- ②시장 상황에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 본 계약 양 당사자는 위에 정한 수량의 변경을 협의하고 합의할 수 있다.
- ③본 조 제2항에 관계없이 어떠한 수량의 변경도 당사자의 서면 합의 없이는 허락되지 않는다. 매수인이 위에 정한 수량의 일정 부분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인의불이행 때문에 매도인이 입은 손실 또는 손해를 매도인에게 배상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적어도 매수인이 구입하지 않은 수량 부분의 00에 상당하는 금액의 배상금을 수령할 수있다.

제9조 (가격)

①계약품의 첫해 가격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유니트 000 (상품명) 각 일금 00원정 (₩)

유니트 000 (상품명) 각 일금 00원정 (₩)

- ②이후 연도의 가격은 각 연도 시작 30일 전에 설정하기로 한다.
- ③이들 가격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모든 세금, 보험, 운임, 관세 및 기타 요금을 제외한 것이다.
- ④매도인이 계약품 전부를 00년 00월 00일까지 인도하는 일이 불가능할 경우, 유니트 000 (상품명) 이 인도될 때까지 매수인은 본 계약에 인용된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 (지불)

각 선적 계약품 가격의 110%를 커버하는 취소 불능 및 양도 가능한 신용장은 본 계약 제7조 제2항에 규정한 각 구입 주문의 발주와 동시에 매도인을 수취인으로 해 개설하기로 한다. 일람불 어음 및 선적서류(선하증권, 상업송장 및 적하목록)에 대해 교환 가능한 상기 신용장은 관련 어음의 교환을 위해 선적월의 최종일 후 적어도 30일의 유효기간을 두고 매도인이 만족하는 일류은행을 통해 개설되어야 한다. 상기 취소 불능 신용장을 수정할 필요가 생긴 경우 매수인은 지체 없이 매도인의 요청에 의거해 그들을 수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

제11조 (선적보고)

- ①매도인은 어떠한 때라도 합의한 스케줄 전에 00 유니트까지의 계약품을 인도, 선적할수 있다. 단, 매수인은 합의한 인도 시기 전에 그와 같은 계약품에 지불할 의무는 없다.
- ②매수인은 매도인에게 00개월 전까지 서면 통지로써 한 번 이상의 월간 인도 및 선적스케줄을 수정할 수 있다. 단, 수정이 본 계약에 근거해 인도되는 계약품의 전량을 감하는 것은 아니다. 매도인에게 00개월 전에 서면 통지를 한 경우 매수인은 월간 감소분을 반영하기 위해 스케줄을 개정할 수 있다.
- ③계약품이 합의한 선적 및 인도 스케줄에 따라 매도인에 의해 적시에 선적 또는 인도되지 않는 경우, 그 유니트의 가격은 00원 삭감된다. 매도인은 삭감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품의 항공 선적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매도인이 항공편과 선편의 비용 차액을 부담한다.

제12조 (법의 준수)

매도인과 매수인은 00의 수출 관리 및 안전 규제를 포함하는 000의 규제에 따른다. 매수인은 모든 규제를 준수하는 한편 요구되는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매도인을 합리적으로 원조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출을 요구 받는 보고서에 관한 정보 제공에 임해 마찬가지로 협력해야 한다. 매수인은 적용되는 정부 규제 000에 매수인이 따르지 않은 데서 기인하는 손실, 손해 또는 비용을 보상해 매도인에게 손해가 없도록 한다.

제13조 (검사권)

매도인은 매수인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 대표자가 계약품 및 그 재료의 검사를 위해 모든 타당한 시간에 매도인의 작업장, 창고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는 것을 허가한다. 매도인이 제조한 계약품이 당사자가 합의한 규격 및 품질 기준에 어떤 점이라도 합치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서면으로 그 취지를 매도인에게 통지하고, 나아가 매도인은 통지일부터 00일 이내에 그 불이행을 교정해야 한다.

제14조 (적용 정보)

매수인은 현재 제공 가능한 범주에서 계약품에 관해 다음 각호의 영문에 의한 적용 정보를 무료의 비독점적 대여로써 매도인이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 1. 계약품의 상세한 규격서
- 2. 매도인이 계약품의 제조에 사용한 설계도
- 3. 계약품의 공정에 관한 정보

제15조 (보험)

CIF 또는 C&I 조건의 경우 보험은 매도인이 드는 것으로 한다.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해당 보험은 송장 금액의 110%로 들게 되지만, 일체의 전쟁위험은 포함되지 않는다. 본계약 중에 정하고 있지 않는 보험은 매수인이 특별히 요청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매도인이 준비할 수 있다.

제16조 (규격)

계약품의 규격은 매수인이 제공하는 제조 규격, 도면 및 정보, 그리고 견본에 따르기로한 바, 매도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품의 품질은 당사자간에 확인한 견본품과 동일하거나 그것 이상이어야 한다.

제17조 (하자)

- ①매도인은 매수인의 기술 정보, 규격서 또는 도면에 근거해 매도인이 제조한 계약품의 하자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매도인은 계약품의 하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지기로 한다.
- 1. 매수인 또는 그 사용자가 매수인에 의해 매도인에게 제공된 규격의 장치 이외의 장치에 계약품을 적용한 경우
- 2. 매수인 또는 그 사용자가 매도인의 서면 승낙을 사전에 얻지 않은 채 개변 또는 변경을 한 경우

제18조 (클레임)

①계약품의 수량, 중량, 상태, 손실, 손해에 관한 클레임이나 이의는 인도되는 계약품의 송장일로부터 00일 이내에 매수인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매수인이 인도한 계약품에 관한 클레임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클레임 또는 이의를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하고, 서면에 의한 도착 검사보고 복사본과 하자 설명서를 매도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매수인이계약품에 하자가 있다고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 매도인은 클레임이 확실한지 확인할 수있다. 매도인의 요구가 있으면 매수인은 하자 클레임을 제기한 계약품의 견본을 반송하기로 하고, 또는 매도인의 종업원에게 그 계약품을 매수인의 창고에서 검사할 수있도록 허가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사전동의 없이 하자 클레임이 제기된 계약품을 매도인에게 반송하거나 폐기 또는 수선해서는 안 된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클레임 수령후 00주 이내에 클레임을 일으킨 하자에 관한 매도인의 견해를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 ②매수인은 하자가 증명된 계약품을 매도인이 처분에 관한 지시를 줄 때까지 보관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하자가 증명된 계약품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새로운 계약품으로 교체하기로 한다.
- ③매수인이 긴급히 계약품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경우에 매도인은 상기의 수속을 단축하기 위해 또는 가능한 한 짧은 기간에 하자 있는 계약품에 대한 대체품을 매수인에게 공급하기 위해 매수인과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제19조 (상표)

- ①매도인은 매수인이 특정하는 계약품에 대해 매수인 또는 그 관련 회사의 1개 이상의 상표를 사용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상표의 식별성, 표상성, 유효성을 위태롭게 하는 방법이나, 계약품 또는 그를 담기 위한 용기와 관련해 다른 상표 또는 상호를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매수인이 특정한 어떠한 상표도 사용하지 않는다.
- ②매도인은 상표 000가 매수인의 독점적 재산임을 인정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해당 상표 또는 기타의 상표를 붙인 어떠한 계약품도 판매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하지 않는다.
- ③매도인은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매수인이 사용하는 어떠한 특허, 상표, 상호에 관하여도 권리를 취득하지 않음을 인정하지만, 본 계약에 기초한 매도인의 활동과 관련해 그에 관한 공업 소유권을 사용하는 권리를 갖는다.

제20조 (침해)

매도인은 어느 국가에서도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 상업적 의장 또는 저작권에 관한 어떠한 침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1조 (비밀)

본 계약 양당사자는 본 계약기간 중 및 그 종료 또는 해제 후에도 본 계약의 체결 및 계약 내용을 포함해, 본 계약에 기초한 업무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입수 혹은 당사자간에 교환된 어떠한 비밀정보도 제삼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제22조 (하청)

매도인은 본 계약 또는 그 실질적 부분을 하청시키기 전에 매수인의 승인을 얻는 데 동의한다. 그렇지만 이 제한은 표준적인 상업상의 공급물 또는 원자재의 구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23조 (해제)

어느 당사자도 다음 각호의 중요 사유를 이유로 통지기간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1. 상대방 당사자의 지불 불이행
- 2. 판매 제한의 위반
- 3. 매수인이 제공하는 기술상의 지시 사항 불준수
- 4. 비밀 사항의 누설
- 5. 상대방의 파산 또는 지불 불능
- 6. 상대방의 임의 또는 강제 청산
- 7. 상대방의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

제24조 (종료 후의 조치)

본 계약이 본 계약에서 규정한 대로 종료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본 계약의 해당 부분의 이행에 임해서 매도인이 특별히 제조한 또는 특별히 취득한 모든 계약품, 반제품, 재료, 부품, 설계도 및 정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일 및 그것들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 (통지)

- ①본 계약에서 의도하는 통지는 서면으로 행해져야 하고, 직접 교부되거나 또는 요금을 지불한 우편에 의해 주식회사 000의 000 앞으로 매도인에게, 주식회사 000의 000 앞으로 매수인에게 우송된다. 통지를 송부해야 하는 수신인 주소 및 수신인은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다.
- ②전항에 따라 우편으로 송부되는 통지는 우송 7일 후에 수신인에게 수령 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③채무불이행 또는 종료의 통지는 배달증명을 첨부한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되어야 한다.

제26조 (중재)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우호적이며 신속하게 해결하기로 한다. 그렇지만 협의 개시 후 30일 이내에 우호적 해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규칙에 따라 서울에서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합의한다. 이중재 판단은 최종적인 것이며 한편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제27조 (불가항력)

어느 당사자도 불가항력 또는 그 당사자의 지배를 넘은 기타의 사유를 이유로 해서 본계약의 의무의 불이행 또는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본 계약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단, 해당 당사자는 그 발생을 상대방에게 신속하게 통지하고, 가능한 한 그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행동한다. 당사자는 그 같은 사유가 본 계약에 기초한 각각의 의무에 대해 갖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합의한다. 그같은 사유에 의해 발생한 계약품의 인도 부족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한 경우에만 변상하는 것으로 한다.

제28조 (계승인 및 양수인)

본 계약은 본 계약당사자 및 각각의 계승인과 양수인에게 구속력을 갖고, 이들의 이익을 위해 효력을 발휘하지만,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기초한 권리를 양도하지 않는다.

제29조 (무역조건)

본 계약 또는 이와 관련된 개별 계약에 규정하는 모든 무역 조건은 국제상업회의소의 최신의 인코텀스에 따라 해석된다.

제30조 (준거법)

본 계약의 효력, 해석 및 이행은 00법에 의해 지배되고, 동법에 따라 해석된다.

제31조 (완전한 합의)

본 계약은 본 계약에 포함되는 모든 주요 사항에 관해 당사자에 의한 그리고 당사자간의 최종적이고 유일한 합의에 의해 구성된 것이며, 그 주요 사항에 관한 당사자간의 모든 사전의 표시, 이해, 합의에 우선한다.

제32조 (언어)

본 계약은 영어만으로 이루어지고 영어에 의해 지배된다. 다른 언어에 의한 번역은 편의상 이용되는 데 지나지 않을 뿐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제33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인)
을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인)